오산시시민헌장조례

제정 1989년 7월 14일 조례 제143호

제1조(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릿글

우리 오산은 충·효·신의 얼을 이어받아 날로 새롭게 뻗어가는 살기좋은 터전입니다.

우리모두 영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지켜 나갑시다.

본문

- 1. 예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 2. 이웃을 사랑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복된가정을 만듭시다.
- 3. 슬기모아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는 문화도시를 이룹시다.
- 4. 스스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으뜸고장을 세웁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